

공장설립 등 기업 입지 환경 대폭 개선된다.

- '07.7월말,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 예정 -

산업자원부 제공

□ 내년 1월말부터는 공장설립 승인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가 인·허가의
체처리 대상*에 추가(제13조의2)됨에 따라,

* 의제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로 당해 인·허가를 받은 것
으로 간주하여 공장설립 절차 및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

: 산집법상 의제처리 대상은 18개법률, 37개 인·허가사항('08.1월)

○ 기존에 40~60일 내외* 소요되던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이 최단 20일까지 단축되는 등 공장을 설
립하는 기업의 행정적·경제적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.

*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가 필요한 경우, 현재는 공장설립승인 처리에 20일이 소요되고 사전재해영향성
검토 협의에 별도 30일(필요에 따라 10일 연장)이 소요

* 건축물 용도변경을 통해 공장을 설립할 경우, 사전에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후(20일)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
(20일)를 이중으로 진행하여 총 40일이 소요

○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, '산집법') 개정
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어 옴에 따라, 빠르면 7월말 공포를 통해 2008년 1월말
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□ 금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,

○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지원센터가 공장설립대
행업무 처리시,

- 처리기한내 지자체의 의견이 없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*를 도입(제13조)함으
로써,

* 공장설립지원센터가 대행업무 처리시 30일내 지자체 의견이 없을 경우 승인된 것을 간주하는 자동승인제
도 도입,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 가능

- 지자체의 공장설립처리의 불필요한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장설립대행업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

시켰다.

□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*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,

* 지식기반산업과 산업단지혁신사업(혁신클러스터)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지구

○ 기존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 뿐만 아니라 개발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정 근거를 마련(제22조)하여

○ 산업단지의 개발 및 신규 조성단계에서도 각종 지원제도*를 활용하고 조성원가 절감**효과를 도모함으로써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.

*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(법 제22조의2)

: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, 산업기술개발사업,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, 기술이전 촉진사업, 지방중소기업 육성과 관련 자금 조성 지원, 아파트형공장 설립 자금 지원,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우선 설치

** 각종 부담금 감면을 통한 조성원가 절감 가능(법 제22조의2제6항)

: 산립자원조성비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가능

한편, 이미 산집법에 반영제45조의2)되어 있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,

○ 사업 추진시 산업단지 지정권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기 협의한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할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.

□ 최근 북한지역의 공장입지 개발이 가능*해짐에 따라,

○ 산업단지 전문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우리기업의 북한지역내 경영활동 및 산업단지 입지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(제35조의6)하였고,

* 산입법 46의5(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) 정부는 북한지역에 있는 남한기업 및 북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장입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.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46의5조)

○ 또한,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임대전용산업단지*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, 단지 입주자격, 임대기간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(제38조의2)토록 하였다.

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·운영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46의7조)

□ 아울러, 산업단지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,

○ 아파트형공장 사업시행자의 법 준수 의무조항을 신설*(제28조의4)하고, 허위정보 제공을 기존 산집법상의 벌칙부과 대상에 새로이 포함(제52조)시켜,

*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.

- 사업시행자의 허위정보 제공을 통한 분양이익 실현에 대한 기대 심리를 사전에 제거하여, 아파트형공장에 적법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.

- 한편, 현 산집법상에 규정된 일련의 제재조치*에도 위법을 시정치 않는 일부 불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*을 부과(제43조의3)할 수 있도록 하여,
 - * 입주계약위반 행위발생(위반대상)→시정명령(6개월)(법42조 1항) 및 고발→입주계약 해지(법42조 1항)→6개월~1년 이내 처분 및 양도(법43조 1, 2항)
 - *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일정한 기간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벌
- 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합목적적 사용을 유도하게 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산업자원부는 앞으로도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다양한 기업환경개선 방안을 발굴, 다각적으로 검토·개선하여 국내투자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〈 산집법 개정 주요 골자 〉

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

- ① 공장설립지원센터 대행업무 처리시 처리기한내 지자체 의견이 없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도 도입(제13조)
 - * 처리기한 : 30일,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 가능
- ② 공장설립 승인시 인·허가 의제대상 확대(제13조의2)
 - * 공장설립승인시 의제처리 확대 : 17개 법률, 35개 인·허가 18개 법률, 37개 인·허가

산업단지 관리·운영상 개선 사항

- 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제도 개선(제22조)
 - * 기존 집적지 외에 개발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정 근거 마련
- ② 아파트형공장 사업시행자의 법 준수 의무 부과(제28조의4, 제52조)
 - *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 모집 금지
- ③ 국내기업의 북한진출 지원 근거 마련(제35조의6)
 - * 산단공으로 하여금 북한지역 투자 및 기업활동을 위한 공장설립·산업입지 관리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
- ④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근거 마련(제38조의2)
 - * 임대전용산업단지와 관련 관리측면에서 산집법상 법적 근거조항 마련
- ⑤ 산업단지 위반업체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(제43조의3)
 - * 입주계약 해지 후 재산의 처분·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의 시정기간을 부여 후 이행강제금 부과
- ⑥ 구조고도화 사업추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(제45조의2)